기숙사(지산관)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- 제1조 (목적) 기숙형고교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입사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, 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
- 제2조 (명칭) 본 기숙사는 순창제일고등학교 "지산관"이라 칭한다.
- 제3조 (운영) 지산관은 학교장이 총괄운영 감독하고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4조 (운영기간) 지산관 운영기간은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때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- 제5조 (이용제한) 지산관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입사생과 전담사감, 사감교사 외에는 본 시 설을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입사생들의 생활과 시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학생과 교직원도 일정한 기간 이용할 수 있다.

제2장 조 직

제6조 (운영위원회) 지산관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산관 운영위원회를 둔다.

- 1. 위원장 : 교감
- 2. 부위원장 : 학부모 운영위원(학년 별 2명) 대표
- 3. 위 원 : 각 학년부장, 학부모 운영위원 5인·대표 외
- 4. 간 사 : 기숙사운영부장
- 5. 소위원회 구성(학교장, 교감, 각 학년부장, 기숙사운영부장)

제7조 (운영위원회의 임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생활규정, 상벌규정, 일과표 제정에 관한 사항
- 3. 기숙사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
- 4. 소위원회 임무 : 제14조 2항의 입사의 결정 및 제16조 재입사 결정
- 제8조 (운영위원회 소집)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 (사감) 지산관을 운영하고 입사생의 지도 감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감을 두며 형편에 따 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.
- 1. 기숙사운영부장 : 1명, 교사 또는 필요시 사감을 공채로 임명(교사자격증 소지자 우선 순위)
- 2. 전담사감 : 계약직 선발**(남1)**

제10조 (사감의 임무) 사감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기숙사운영부장 : 지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문제점 발견시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 해당 요일 사감교사는 사감부장의 역할을 대신한다.(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조직표 참조)
 - ① 지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며, 전체를 순회하며 지도한다.
 - ② 지산관 운영일지 및 출석부, 외출·외박대장을 기록한다.

2. 전담사감 : 위원장 및 사감부장의 명을 받아 입사생을 지도, 감독한다.

	공통업무	- 인원점검 및 전호 - 일과표에 따른 생활지도 - 호실구역 및 학습실 관리 - 외출•외박지도 - 안전예방 및 건강 지도 - 생화규정 및 상벌점 제도 시행 - 각종 공지 - 응급상활 발생 시 보고 및 보호자 연락 - 외부출입문 관리
업무분장	전담사감	- 3, 4층 지산관 생활관리 - 지산관 내 CCTV관리 및 냉난방관리 - 2, 3층 집중학습실, 모둠학습실 학생관리 - 지산관 비품 및 소모품 관리 - 청소지도(3, 4층 남학생 호실 구역, 2층 로비, 남학생 계단, 1층 체력단련실, 3층 로비 및 현관, 3층 남자화장실, 장애인화장실, 사감실 앞 복도, 3층 멘토실) - 남학생 호실 출입문, 남학생 계단 방화문, 1층 계단 출입문, 2층 시설 출입문 지산관 남학생 구역 시설관리, 남학생용 냉장고 관리 - 담당구역 청소배정표(남학생), 집중학습실 출석부(남학생), 상벌점 현황표(남학생) - 입사 및 퇴사원서, 입사생 현황 및 방배정표, 학급별 기숙사 명단, 집중학습실 외출외박대장, 각종공지양식, 지산관 현황판 관리 - 4층 여학생의 지산관 생활관리 - 지산관 청소용구 및 약품 관리 - 청소지도(4층 여학생 호실구역(정수기), 여학생 계단, 3층 여학생 학습실, 3층 모둠 학습실, 4층 로비(분리수거함), 5층 로비, 2층 여자화장실, 3층 여자화장실) - 여학생 호실 출입문, 3층 여학생 학습실 출입문, 1층 계단 출입문 지산관 여학생 구역 시설관리, 여학생용 냉장고 관리 - 담담구역 청소배정표(여학생), 집중학습실 출석부(여학생), 상벌점 현황표(여학생)

- ①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지도한다.
- ② 수시로 순회를 하여 지산관 생활관리 및 면학분위기조성에 주력한다.
- ③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기숙사운영부장이나 사감교사에게 보고한다.
- ④ 점호시간에 생활지도, 청소지도, 안전예방지도, 건강지도, 외출,외박지도, 예절지도,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도를 한다.
- 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.

- 제11조 (자치위원회) 학생들이 지산관 생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운에 규칙을 지키고 지산관이 자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치위원회 임원을 둔다.
- 1. 대 표 : 1명(2학년 2학기 선출)
- 2. 부대표 : 1명(2학년 2학기 선출)
- 3. 학년 대표 : 6명(학년 별 남녀 1인)
- 제12조 (자치위원회의 임무) 자치위원회는 사감을 도와 자율적인 지산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- 1.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
- 2. 생활점검 및 일과 진행 보조 활동
- 3. 지산관 질서 유지

제13조 (회의) 지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.

- 1.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2회(학기당 1회)로 한다. 단,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.
- 2. 지산관 사감회의는 주 3회 실시한다.
- 3. 자치위원회 회의는 월 1~2회 실시하되, 필요시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3장 입사 및 퇴사

제14조 (입사)

- 1.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(신입생, 재학생)은 입사원서 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별지서식)
- 2. 입사 우선 순위는, 1순위: 역내 원거리 학생(40%), 2순위: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(30%), 3순위: 성적우수자(30%) 순으로 하며, 입사의 결정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4. 입사할 때에는 기숙사비 납부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5. 입사생의 방 배정은 전담사감 및 기숙사운영부장 협의를 거쳐 정한다.
- 6.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입사는 3개월 단위로 월 초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5조 (퇴사) 퇴사는 자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하되,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확인을 거친 후 퇴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기숙사운영부장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단위로 퇴사 처리한다.(단, 3학년은 수능 종료 익일에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, 타 시·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은 본인이 원하면 퇴사하지 않을 수 있다.)
- 1. 자진퇴사 :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사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퇴사할 수 있다.
 - ①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가정요양이나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
 - ②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퇴사를 희망하는 자
 - ③ 가정사정 등으로 더 이상 지산관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
- 2. 강제퇴사 :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본인 및 보호자에게 퇴사를 명한다.
 - ① 상벌규정 처리 기준표의 퇴사항목에 해당하는 자
 - ② 생활수칙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월 벌점 10점, 2개월 벌점 17점, 최근 3개월 벌점 24점에 도달한 자.
 - ③ 1개월 이상 기숙사비를 미납한 자
 - ④ 월 외박 3회 이상인 자, 2개월 외박 4회 이상인자, 학기별 외박 5회 이상인자

(※단, 외출 2회를 외박 1회로 간주한다.)

⑤ 학교장으로부터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지산관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 후 결정한다.

제16조 (재입사)

- 1. 특별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한 자는 2개월 이후 재입사 할 수 있다.(단, 2회에 한한다.)
- 2. 강제퇴사자 중 강제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학생은 소위원회를 통해 1회에 한해 재입사할 수 있다.

제17조 (입사 자격 제한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1. 전염병, 피부병 등 감염성 질병의 질환자 및 보균자
- 2. 학교선도규정에 의해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
- 3. 폭력, 흡연, 약물중독, 불건전한 이성교제 학생
- 4. 기타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소위원회에서 판단되는 자

제18조 (호실의 배정)

- 1. 같은 호실에 동일 학년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인원이 불균형할 때는 학년을 혼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.

제19조 (기숙사비)

- 1. 기숙사 입사 대상자는 학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한 안에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2. 기숙사비는 매월 단위로 납부하며 기 납부된 관리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- 3.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급식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급식규정에 준한다.

제4장 교육 및 선도

제20조 (학생 교육 및 생활 점검)

-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되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,
 교육 내용 및 횟수는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.
 - ① 기본생활 교육 : 입사 시 및 학기별 1회
 - ② 안전 및 건강 교육 : 입사 시 및 필요시 수시
 - ③ 생활예절 교육 : 입사 시 및 학기별 1회
 - ④ 근검절약 교육 : 입사 시 및 필요시 수시
- 2. 입사생은 사감에게 수시로 생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.
 - ① 가급적 청소시간이나 취침 전, 등교 전에 점검을 받는다.
 -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점검을 명할 수 있다.
- 제21조 (교육내용) 지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일 및 주말에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전개한다.
- 1. 학력향상을 위한 집중학습
- 2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
- 3. 지산관 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(체험.예술.봉사.취미활동, 심신수련활동, 인성 교육프로 그램, 진학 및 상담활동, 강연 등)

제22조 (상.벌점 운영 규정)

- 1. 사감은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따라 규정에 의한 상점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2. 한 학년를 기준하여 상점 및 벌점을 누적하여 생활지도에 적용한다.
- ① 상점은 아래와 같으며 벌점 상쇄에 활용할 수 있다.(상점규정)

구분	항목 번호	상점항목	
	1	청소 및 환경미화에 솔선하는 입사생이나 호실(점검 시)	1
	2	봉사활동 1시간	
	3	학년 대표(월 단위)	
사내활동	4	봉사활동 2시간	2
사내철공	5	자치회 대표·부대표(월 단위), 외출 외박이 없는 자(월별)	2
	6 호실 청결상태 양호(청결점호 연속 10회)		3
	7	생활태도가 현저히 좋아진 자(자치위원회와 전담사감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, 2개월)	3

② 벌점의 적용은 아래와 같다.(벌점규정)

7.8	항목	H리카디	점수	
구분	번호	벌점항목		
	1	방 청소(호실 전원) 및 정리정돈 불량	1	
	2	담당구역 청소 불량	1	
	3	세탁물 방치	1	
	4	언행 불량	1	
생활	5	일과 중 소란 행위, 고성방가	2	
태도	6	점호 후 호실에서 휴대폰 사용	2	
	7	사감 지시사항 불이행	3	
	8	점호 시간 이후 고성방가 및 타인 취침 및 학습 방해	4	
	9	지시사항 이행지연 및 불이행 반복	5	
	10	사감에 불손행위 및 지도 불응	강제퇴사	
	11	호실 소등 불이행	1	
	12	소등 시간 위반	1	
	13	복장 및 화장	1	
	14	실외화 착용	1	
	15	등교시간 위반	2	
	16	무단 취침	2 2	
	17	전기코드 뽑지 않고 방치	2	
	18	학습실 휴대폰 소지 및 사용	2	
규정	19	일과 중 타호실 출입	2	
준수	20	전열기 무단 사용(충전기, 헤어드라이기 허용)	2	
	21	점호 이후 타 호실 출입 및 취침	4	
	22	아침 조회, 저녁 점호 불참	5	
	23	02:00~06:00시 호실구역 이외의 지산관 다른장소 출입	5	
	24	기숙사 입실 시간 외 출입	3	
	25	무단외출, 무단외박	1차 사내봉사 5시간 2차 강제퇴사	
	26	아침조회, 저녁 점호 지각	3	
	27	무단 귀사시간 위반	5	
	28	컴퓨터 게임(학습실 및 호실)	3	

	29	지정된 장소 이탈(집중학습실, 전산실, 체력단련실)	3
H 71.T1	30 타인 비방 및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		강제퇴사
	31	기숙사 내 허락된 장소 외 출입	3
	32	학생금지품 소지 및 열람(위험물, 불온물, 오락기구, 음란	3
불건전		물 등)	
생활	33	도박, 협박이나 폭행, 금품갈취(관련 입사생 모두)	강제퇴사
	34	불건전한 이성교제	강제퇴사
	35	외부자 숙박제공	강제퇴사
	36	주류 반입이나 음주, 흡연 관련	강제퇴사

※기타 학생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 시 이에 유사한 행위에 준하여 벌점 부과, 현재 항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23조 (포상)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모범이 되는 학생은 사감이 추천하여 매년 6월과 10월 에 표창 할 수 있다.

- 1. 생활수칙을 준수 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
- 2. 봉사나 선행사실이 뚜렷하거나 입사생이나 사감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 제24조 (징계)
- 1. 퇴사처분대상 입사생에 대해서는 본인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

제25조 (시설물 보호)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지산관 내 각종 기물이나 시설물을 분실 또는 훼 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사생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한다.

제26조 (화재예방) 화재발생시에는 사감이나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한다.

제5장 지산관 생활

제27조 (지산관 생활수칙)

- 1. 입사생은 생활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생활수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8조(기상 및 점호)

- 1. 점호는 매일 소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특별점호는 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 실시한다.
- 2. 점호에 불참한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며, 그 사유를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9조 (조식 및 등교)

- 1. 식사는 급식실에서 규정된 시간에 해야 한다.
- 2. 지산관 내에서는 취사 행위 및 취사도구 반입이 금지 된다.
- 3. 등교는 08:15시까지 기숙사에서 출발해야 한다.

제30조 (외출 및 외박)

- 1. 기숙사에서 출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.
 - ① 외출 : 당일 복귀를 전제로 한 출타
 - ② 외박 :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출타

- 2. 외출, 외박을 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반드시 사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3. 외출 2회를 외박 1회로 간주한다.
- 4. 학원 등의 학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 시에는 외출로 간주하지 않는다. (단, 학교행사 모의고사나 정기고사, 체육대회 시는 외출로 간주하고 외출 규정에 따른다.)
- 5. 월 외박 3회, 2개월 외박 4회, 연 5회 이상의 외출 시 퇴사를 명령한다.

제31조 (시설관리 및 방화책임자)

- 1. 각 실의 관리 책임은 해당 호실 사생이 하며 방화관리자는 사감, 방화책임자는 호실장이 맡는다.
- 2. 개인에게 지급된 물품이나 공용물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개인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(그 책임이 불분명시는 해당 호실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)
- 3. 비품이나 장비는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.
- 4. 제반 시설물 등의 고장 발견 시는 지체 없이 전담사감이나 사감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5. 물 및 전기를 절약하며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한다.

제32조 (환경위생)

- 1. 생활 주변 청결을 위하여 매일 담당 구역을 청소한다.
- 2. 아침에는 항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여야 하며 물이나 오물 등을 밖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.
- 3. 타인의 안정된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소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.
- 4. 응급환자 발생시는 사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.

제33조 (기숙사 일과표)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과표를 운영한다. 단학교 행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은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2022년 지산관 일과표

		평 일 (월 ~ 목)		
시 간	<u>'</u>	일 정 내 용		
06:30~07	7:00 フ	기상 및 침구 정리정돈		
07:00~07	7:20 0	아침점호, 운동(체조)		
07:20~07	7:50 0	아침식사		
07:50~08	8:15 등	- - -		
08:20~18	8:30 흐	학교생활(정규수업 및 방과후학교)		
18:30~19	9:15 ^X	대년 식사 / 기숙사로 이동		
19:20~21	1:00 7	기숙사프로그램 / 자율학습		
21:00~21	1:10 7	기숙사 개방 및 발열체크, 인원 점검		
21:10~22	2:10 🌣	자율학습 — 집중학습실, 멀티실 이용 학습자료 준비, 자기주도적 학습(EBS신청)		
22:10~23	3:00 7	H인 정비 및 휴게실 이용		
23:00~23	3:20 듣	당규역 청소 및 호실 정리정돈		
23:20 ~	<i>,</i>	위침 점호 후 취침 및 개인학습		

일 요 일			
시간	일 정 내 용		
18:00~20:20	귀사, 휴식 및 개인별 학습		
20:20~20:30	학습실 이동 및 인원 점검		
20:30~21:40	자율학습 — 집중학습실, 멀티실 이용 학습자료 준비, 자기주도적 학습(EBS시청)		
21:40~22:40	개인정비 및 휴게실 이용		
22:40~23:00	담당구역 청소 및 호실 정리정돈		
23:00~	취침 점호 후 취침 또는 개인 학습		

제6장 개 정

제34조 (개정) 기숙사 운영 규정이 개정의 요건이 발생시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**2021년 07월 09일**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기타세칙) 지산관 운영규정 외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록

- 1. 2022학년도 순창 제일고 기숙사 운영위원회 조직표
- 2. 지산관 생활수칙

2022학년도 순창 제일고 기숙사 운영 위원회 조직표

교감 - 기숙사 운영 총괄		
기숙사 사감부장	- 사감 및 사감교사 배치 - 지산관 비품 및 시설 관리 총괄 - 학생 관리 및 지산관 사감교사의 프로그램 실행 운영 - 사감교사의 시간외 근무 및 프로그램 운영 제안 - 지산관 입사생 자치회 주관 - 기숙사 공고내용 홈페이지 고지	
학년부장	- 진학 및 진로관련 성적 분석 및 상담 - 학년 일정에 따른 기숙사 운영 협조	
학부모대표 (1, 2, 3학년)	-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 및 건의	

지산관 생활 수칙

1. 일반 준수 사항

- 가. 사감의 지도와 통제에 따라 정해진 일과표에 의거 질서 있게 생활한다.
- 나. 선후배와 동료 간에 우애 있게 지낸다.
- 다. 개인 및 공중위생에 유의하고 정리 정돈 및 청결에 힘쓴다.
- 라. 근검절약하며 공공시설물을 아낀다.
- 마.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학업 계획을 세워 면학에 힘쓴다.
- 바.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한다.
- 사. 상대를 배려하고, 절도 있고 정숙하게 생활한다.
- 아.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원천적으로 본인이 지며 사고경위를 조사한 결과 분실의 원인이 입사생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균등분배하여 배상해야 한다.
- 자. 필요에 따라 입사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.
- 차. 지산관 운영규정과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카. 학원 등의 사유로 귀가 시에 22시 10분 이후는 홀로 걸어오지 않고, 보호자나 학원차량으로 귀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타. 02:00~06:00시까지 호실구역 외에는 출입금지를 원칙으로 한다.(단, 시험기간 전 2주부터는 사용 가능함)
- 파. 기숙사 운영 시 학생건강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생활수칙 및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한다.

2. 생활 수칙

- 가. 지산관 일과표를 준수하고 점호 및 청소 활동에 참여한다.
- 나.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실(室)은 솔선하여 매일 정리정돈하고, 평소 정리정돈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.
- 다. 필요 이상의 많은 현금이나 고가품, 귀중품 등은 지니지 않는다.
- 라. 지산관의 공공물품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는 해당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.
- 마.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소등과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.
- 바. 환자 발생. 수상한 자 출현 등 긴급 사항 발생시에는 즉각 사감에게 신고한다.
- 사. 고성방가나 소란행위를 하지 않으며, 정숙하게 면학에 힘쓴다.
- 아. 지정된 장소 외에서 학습 및 학습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자. 외출 및 외박은 사감에게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 시행하되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귀사해야 한다. 부 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그 사실을 사감에게 전화로 알리고 귀사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.
- 차. 기타 해서는 안 되는 행위

생활 수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				
연번	내용	연번	내용	
1	점호 불참	10	호실 정리·정돈 및 위생 불량	
2	소란 및 취침 방해	11	일과시간 위반	
3	타호실 무단 출입	12	무단 외출	
4	전열기 무단 사용	13	무단 외박	
5	비정상적 출입(월창, 배수관 등)	14	귀사 시간 위반	
6	음식물 반입 및 취식	15	기숙사 기물 절취 및 파손	
7	흡연.음주.도박 등	16	풍기 문란	
8	전등 미 소등	17	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	
9	학교선도규정 위반	18	사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	

3. 위반자에 대한 조치

- 가.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입사생은 사안에 따라 벌점 1점 ~ 퇴사 조치한다. 기숙사 사감은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생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 명단과 지도사항을 지 산관지도 일지에 기록한다.
- 나. 지산관 상.벌점지도일지에 위반내용을 누가기록하고 게시판에 상.벌점을 공표한다..
- 다. 기숙사생이 사감의 지도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상당 기간 지속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벌점규정에 의거 퇴사 조치한다.